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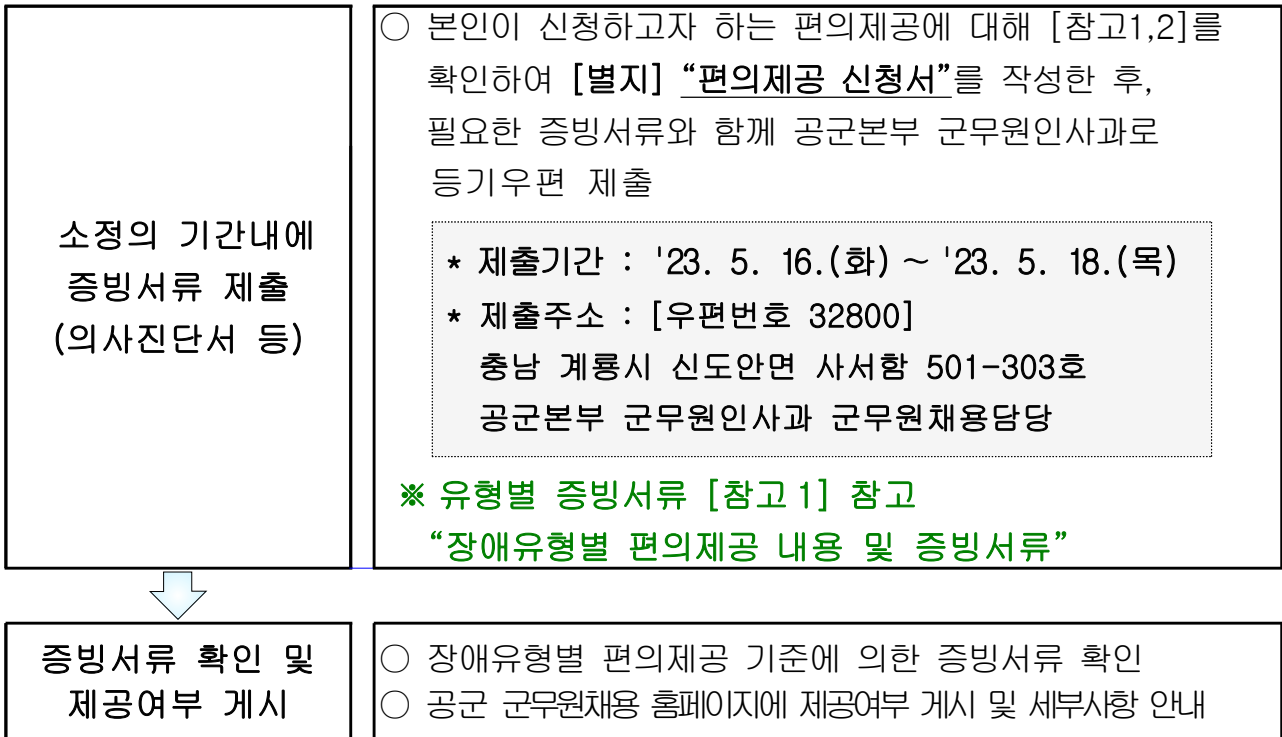
[붙임]

2023년도 공군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

□ 편의제공 대상

- 공군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편의제공 신청 절차



□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

1.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【참고1·2】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**사전에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[참고1·2]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를 기재)

※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·접수합니다.

2.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편의제공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단,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.

3.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에서 **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
※ 다만 **임신부의 경우에는** 의료법 제3조에 의한 **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**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※ 해당 지역의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**는,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**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] → [병원 및 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**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**)

4. '22년 이후 공군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.

※ 단, 기 제출한 증빙서류는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여야 하며, 편의제공 신청서(별지)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5. '22년부터 공군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'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'이 가능합니다. ([참고 4] 참조)

6. 세부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시 안내할 예정이며,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(042-552-1453 / 145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(필기시험)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
지체 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,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,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
시각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음성지원 컴퓨터 · 점자문제지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존 3급 1, 2호
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음성지원 컴퓨터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· 점자문제지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*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**	기존 4, 5급 1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 이하
	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5급 2호, 6급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-6급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	
	임신부	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(원본)		
	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진단서 (원본)		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* 일부 과목의 경우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*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됨.

***,*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화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**

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지체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개인발표과제 작성 · 검토시간 1.5배 연장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개인발표과제 작성 · 검토 시간 1.5배 연장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
시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·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 위원 사전 고지 · 개인발표과제 작성 · 검토 시간 1.5배 연장
청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
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※ 면접시간 1.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

참고 3

[해당 응시자]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**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**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**에서 발급한 **의사 소견서 또는 임상실질확인서**로 증빙 가능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**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**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2.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구 분	7, 8, 9 급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23년 5월 11일
진단서 발급일	2021년 5월 12일 이후

3.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(장애)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 -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
- ② (장애로 인한)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 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.
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 수,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.

<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 ※ ① ~ 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기 타		①장애유형 및 정도 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 : 편한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**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 (소견서 불인정)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응시요령 안내

□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

- (허용 대상) ① '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' 편의제공 대상자 ② 장애인
 ※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가능
- (허용 시간) ① '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' 편의제공 대상자: 시험 중 상시 허용
 ② 장애인: 시험시작 30분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허용
 <② 장애인 응시자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시간>

9급 응시자	정규시험시간	1.5배 연장시간	1.7배 연장시간
시험시간	14:00~15:15(75분)	14:00~15:53(113분)	14:00~16:08(128분)
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	14:30~14:55	14:30~15:33	14:30~15:48

7급 응시자	정규시험시간	1.5배 연장시간	1.7배 연장시간
시험시간	14:00~15:40(100분)	14:00~16:30(150분)	14:00~16:50(170분)
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	14:30~15:20	14:30~16:10	14:30~16:30

※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
- (허용 절차) 같은 성별의 복도담당 시험관리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고 사용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

□ 시험시간 연장

- (시험시작시각 알림) 정규시험 시작(14:00)과 동일, 타종으로 알림
- (시험종료시각 알림) 별도 타종 없이 시험감독관이 구두로 알림*
 * 정규시험 종료(9급 : 15:15, 7급 : 15:40) 타종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연장시간까지 시험 진행
- (퇴실) 정규시험시간 종료(11:40) 후 퇴실 가능
 ※ '대필' 제공 대상자는 연장시간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

□ 대필

- 대필 응시자에게는 답안지를 배부하지 않음
- (시험시간 중) 응시자는 시험시간 내 본인의 문제책에 문항별 답안을 표기
 ※ 시험종료 후 답안 추가 작성 및 수정 불가
- (시험종료 후)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의 문제책에 표기된 답안을 대필용 답안지(A3 표기형)에 이기,
 - 이기된 내용(답안·인적사항·책형)을 감독관과 응시자가 비교·확인 후 각각 서명

□ **점자 및 확대·축소 문제책**

- 신청한 점자 또는 확대(118% 또는 150%)·축소(82%) 문제책 제공

□ **응시요령 ·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**

- 응시자 방송교육 문안을 대상 응시자에게 배부
- 시험 시작·종료예고(20분전, 10분전, 2분전, 종료) 서면 알림

□ **확대답안지**

- 일반답안지 대신 신청한 확대답안지 배부(A3 표기형 또는 A3 기입형)
- (답안작성)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
 - 표기형 답안지의 답안표기는 [✓] 표기만 인정
 - 기입형 답안지의 답안기입은 정자로 된 한 개의 숫자를 기입한 것만 인정
 - ※ 중복표기덧쓰기(잘못된 예: 3, 1) 및 수정표기(삭선 등) 등 불가(득점 불인정)
- (답안 정정) 새로운 확대답안지로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 사용
 - ※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

□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- 시각보조도구 및 필기보조도구 등 지참 가능
 - ※ 시험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
- 저장 공간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 자료 삭제 필요

□ **휠체어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**

- 하지지체 장애인, 임신부 등 응시자에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제공
- 휠체어전용책상과 높낮이조절책상은 동일한 책상이나,
 - 휠체어전용책상은 의자 미배치*(휠체어 이용자 등) * 필요한 경우 여분 의자 제공
 - 높낮이조절책상은 의자 배치(임신부 등)

□ **별도 시험실 배정**

- 저층 시험실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험장 배정
- 좌석 간격 조정(시험실당 15명 이하 수용)
- 시험장 및 시험실 배정 시 별도시험실로 배정되어 있음

※ 기타 사항은 일반 응시자 준수사항과 동일함.

[별지]

편의제공 신청서

1) 인적사항

응시번호	직렬/계급	성명	장애유형(정도)	연락처 (집, 휴대전화)

2) 편의제공 내용

참고 1 필기시험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

-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
-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
3) 의사진단서(소견서) 제출 여부

구분	의사진단서 제출(첨부)	의사진단서 제출 불필요
제출(첨부)여부		